시민과 함께
다시 뛰는 고양

8월은 주민세

사업소분

신고납부의 달



세액 계산 방법

기본세액

개인사업자 5만원

법인사업자 5~20만원

자본금	기본세액
50억원 초과	200,000원
30억 초과~50억원	100,000원
30억원 이하	50,000원

+

연면적세액 (330㎡ 초과 시)

1㎡당 **250원**

(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00원)

+

지방교육세

기본세액의 **25%**

=

납부할 세액

기본세액
+연면적세액
+지방교육세

납세의무자	7월 1일 현재 **고양시**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※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,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
신고납부기간	**8월 1일 ~ 8월 31일**
과세표준	사업소 및 연면적
세율	기본세액(5만원~20만원) + 연면적세액(250원/㎡, 330㎡ 초과시) ※ 지방교육세 : 기본세액의 25/100 ※ 신고서에 기재된 연면적이 실제면적과 다를 경우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신고납부방법	위택스(www.wetax.go.kr) 신고납부 우편 · 팩스 · 방문 (구청 세무과) 신고
문의	고양시민원콜센터 ☎031-909-9000

경기도 노동권익센터 **'마을노무사 무료 상담'** 신청하세요!

- 직장 내 괴롭힘 조사지원 및 예방교육,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, 영세사업주 컨설팅
- 문의·상담 : 031-8030-4541, gg.go.kr/nodong

고양특례시